##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46 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 김정호 • 이수진 • 최기상

박희승 • 전진숙 • 이연희

윤후덕 · 정성호 · 임미애

허종식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발생 시 생명· 신체·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고, 해당 업주에게 소방시설,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,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.

한편, 최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무인(無人)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나, 해당 업소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작은 면적으로 인하여 소화기나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반면, 상주 판매원은 없는 상황으로 소규모 화재 발생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다중이용업에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으로 하는 영업을 포함하고, 현재 운영 중인 무인 점포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여 화재 발생의 사

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항제1호).

### 법률 제 호

##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"이용하는 영업"을 "이용하는 영업[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(無人)으로 하는 영업을 포함한다]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무인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다중이용업을 허가·인가·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무인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(無人)으로 하는 다중이용업 주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, 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, 제13조의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 ①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다중이용업"이란 불특정 다	1
수인이 <u>이용하는 영업</u> 중 화	이용하는 영업[판매원 없
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	이 자동판매기를 갖추고 무인
체·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	(無人)으로 하는 영업을 포함
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	한다]
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	
다.	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